
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248호, 2009. 9. 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껌베이스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해동하여 유통되는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해동일로부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(안)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제품의 글자크기 규정 보완(안 제5조제6호)

- (1) OEM 수입식품에 제품명의 1/2이상으로 “위탁생산제품”임을 표시할 때 포장지 면적의 제한으로 글자크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
- (2) OEM 수입식품에 대한 “위탁생산제품” 표시 글자크기를 제품명의 1/2이상 또는 포장면적에 따라 차별을 두어 표시
- (3) 표시기준 적용의 융통성 부여 및 업계의 자유로운 산업활동 기대

나.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(안 제6조제1호가목 및 안 별지 1 제2호다목2)사)

- (1) 냉동 빵류 및 젓갈류를 제조업소에서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가 행정에

고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표시기준 보완 필요

- (2) 냉동 빵류 및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는 제품에는 제조연월일, 해동연월일, 해동 후 유통기한(냉동제품의 유통기한 이내), 해동 후 보관방법, 주의문구 등을 표시
- (3)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

다. 페놀수지 등 기구·용기 등에 주의사항 표시(안 제6조제3호 다목)

- (1)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음.
- (2)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·포장은 식품 가열·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 표시
- (3) 주의사항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건강 보호

라. 유리제 기구에 주의사항 표시(안 제6 조제3호 다목 및 안 별지 1 제1호다목 2)다))

- (1) 유리제 기구를 가열하는 경우 파열 등 오사용에 따른 피해 발생
- (2)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는 직화용, 오븐용, 전자레인지용, 열탕용으로 표시하고, 그 밖의 유리제 기구는 가열 조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
- (3)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의 오사용을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

마. 착향료만을 사용한 제품에 이미지 사용금지 표시 개정(안 제7조제3호 및 별지 1 제1호가목1)다)(3))

- (1) 착향료만으로 맛을 낸 제품에 해당 원료의 이미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원료가 제품에 실제로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·혼동
- (2) 천연착향료를 포함하여 착향료만으로 해당 원재료의 맛 또는 향을 낸 제품에는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원료의 이미지를 사용 금지하고 착향료 사용 여부를 제품명 옆이나 아래에 표시 의무화
- (3)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오인·혼동 방지

바. 식품등의 표시사항 스티커 사용 범위 확대(안 별지 1 제1호가목2))

- (1)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의 수정할 때에도 스티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민원 불편 야기
- (2)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는 관할 허가·신고관청의 승인 없이 스티커 사용 가능
- (3) 식품업계의 포장지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절감 및 관련 민원제도 개선

사.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삭제(안 제9조제3호 및 별지 5)

- (1)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('07. 12. 27),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을 삭제할 필요
- (2)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 삭제

아.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 완화(안 별지 1 제1호가목3))

- (1) 식품소분·판매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는 대부분이 영세업소이므로 소재지 변경이 잦으며 소재지 변경에 따른 스티커 처리시 관할 신고관청의 승인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민원 불편 초래

- (2) 식품소분·판매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는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를 표시 있도록 함.
- (3)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 해소 기대

자. 원재료명 표시 중 식품첨가물 표시 개선(안 별지 1 제1호가목7)나)(2) 및 별지 1 제1호가목7)나)(3))

- (1) 천연첨가물은 간략명 표시가 없어 표시에 대한 융통성 부족
- (2) 천연첨가물의 간략명칭을 마련하고 명칭, 간략명 또는 주용도로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표시기준 재정비
- (3) 식품영업자의 원활한 표시기준 적용 기대

차. 껌베이스 표시기준 개정(안 별지 1 제1호가목7)다)(5))

- (1) 현행 기준에 따라 껌베이스의 원료를 모두 “껌베이스”로 표시하는 경우 산화방지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- (2) 껌의 물성 등을 부여할 수 있는 일부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만 “껌기초제”로 일괄 표시
- (3) 원재료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

카. 식품첨가물의 제품명 표시기준 개정(안 별지 1 제1호나목1))

- (1) 천연첨가물의 제품명을 고시한 명칭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친숙하지 않은 첨가물 명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.
- (2) 식품첨가물의 제품명은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고시한 명칭으로 사용
- (3)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